



제조물책임 관련 판례와 사례 (II)

글 ·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

2. 전기요 사용 중 발생한 화재 피해배상 요구 건

[사건개요]

청구인의 동생은 '92.10.10 밤 본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침실에서 피청구인이 제조, 판매한 전기요(품명 : 인공지능 원적외 전기요, 구입처 : 서울시 ○○○백화점)를 침대 위에 깔고 혼자 취침 중, 익일 새벽 1:10분경 동 전기요의 전원 플러그 인접 부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하여 발화, 상승 연소하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 · 사망하였음.

[당사자 주장]

1) 청구인 주장

청구인 등 유족들은 이 건 사고가 피청구인의 제품상 하자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함.

2) 피청구인 주장

전기요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불응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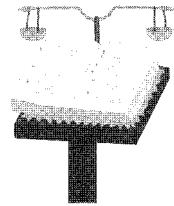
[조정결정사항]

피청구인은 1993.6.23일까지 금 25,000,000원

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.

[조정결정이유]

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'국립과학수사연구소'의 시체부검 결과에 의하면 화재에 의한 질식사임이 판명되었으므로, 이 건 화재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기요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바, 이 건 화재 발생 직후 '○ ○○○경찰서' 가 화재현장에서 발화물질로 추정되는 이 건 전기요의 온도조절기 및 연결전선을 수거하여 위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, 동 조절기는 'OFF' 된 상태로서 자체 과열흔적이 없고 연결전선 인접 부에 합선에 의하여 용융 절단된 흔적이 있으나, 이러한 형상이 있다고 하여 화인을 전기적인 것이라고 만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화인규명은 현장감식 등을 통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, 화재발생 다음날인 '92.10.12 '○○지방경찰청' 수사과 감식계 '김○○' 경장이 실시한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의하면 화재현장에서 흡연의 흔적이나 전기요 이외의 실내전기배선상의 이상 등 달리 화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을 종합하여 이 건 화재가 전기요의 전원플러그



인접 부에서 발생한 전기적 장애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정함.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당 위원회에서 전원 플러그 인접주의 합선흔이 전기요 전원 코드선 자체의 전기적 장애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외부화염에 의하여 전원 코드선상의 절연피복이 연소되면서 합선이 일어나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, 그 논거로서 전기요의 온도조절기가 'OFF' 된 상태에서는 전기요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원코드선상에서 합선이 일어날 수 없고, 또한 화재 현장의 소손상태에 있어 복도에 접해 있는 창문 쪽이 집중적으로 소손된 점과 전기요의 전원플러그가 품혀 있던 110V용 콘센트보다 220V용 콘센트가 더 녹은 점등이 이 건 화재가 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함.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, 첫째 사망자가 사망전 침실에서 거실쪽으로 움직인 흔적으로 볼 때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의식, 본능적으로 사용중이던 전기요의 온도조절기를 'OFF' 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, 둘째 '○○대학교' 전기공학과 전기재료연구실 연구원 '황○○'의 견해에 의하면 전기요의 온도조절기가 'OFF' 된 상태에서도 연결전선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열되고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, 그러한 하자는 제조공정상의 결함에서 기인하거나 사용자가 전원 코드를 잡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털착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, 온도조절기가 'OFF' 된 상태 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결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있으며, 셋째 화재현장을 감식한 동 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기가 유

입되는 부분이 심하게 소손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, 이 건의 경우 화재현장의 구조로 볼 때 복도와 접해 있는 창틀 쪽에서 외기가 유입되어 그 부분이 심히 소손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, 또한 현장감식 당시 220V용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제품이 없었고, 반면 침대의 가장자리 전체가 집중 소손된 점으로 미루어 동 콘센트와 인접한 침대시트(20~30cm 정도의 간격)가 소손될 때의 화염에 의하여 220V용 콘센트가 더 녹은 것으로 추정, 이 건 화재발생 원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음.

따라서 전기요 이외의 타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제시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건 화재발생 원인에 관하여 당초 위 사법경찰관이 추정한 결론을 번복시킬 만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인 바,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 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동생은 이 건 전기요의 연결 전선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질식,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일응 이 건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, 그 책임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사망자가 이 건 전기요를 사용할 때 전원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털착시켜 전선상의 하자를 유발시켰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, 통사인의 관념을 벗어나 제조자인 피청구인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분쟁조정의 법리에 무리가 있음을 고려하여, 청구인이 당 위원회에서 이 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전제로 제시한 배상요구액 50,000,000원의 50%를 피청구인이 사망자 유족에서 지급함이 상당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.

[조정결과] 성립